

경운대학교 동해연수원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동해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의 이용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분장) ①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은 사무처에서 관장하고, 사용신청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② <삭제>

제3조(연수의 종류) <삭제>

제4조(사용대상자) 연수원의 이용은 본교 학생, 교직원 및 가족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공동사용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타 기관 소속 임직원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허가) ① 연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원 사용신청서(별지제1호서식)를 기획처로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대학본부 및 각 대학(원)장 주관하의 학술연구 및 행사, 학생지도를 위한 이용은 타에 우선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허가취소) 승인된 이용목적과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의 제한)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전염성 질환자, 정신질환자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
3. 기타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(사용자 수칙) 연수원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입소시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이용안내를 받고 내부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2. 이용 허가된 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3. 야영 및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.
4. 시설물을 아끼고 화재예방,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.
5. 일일사용 시간은 14:00부터 익일 12:00까지로 한다.
6. <삭제>
7. 인근 주민과 연수원 이용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말과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,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시에는 즉각 퇴실조치 될 수 있다.
8. 퇴실시에는 내부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.

제8조의2(관리비) 연수원 운영 및 사용에 따른 관리비(청소, 오물처리, 수선, 세탁, 냉난방 전기료 등 실경비)를 [별표1]을 근거하여 책정하고 징구할 수 있다.

제9조(변상책임) 연수원 이용자가 연수원 시설물, 비품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

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 <삭제>

제11조(기타) 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